## 로마법에 규제된 소유권제도의 반동적성격과 그것이 자본주의물권법에 미친 영향

현 웅 삼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하는 중 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회적지위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못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제50권 198폐지)

착취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있는가 못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갈라진다. 이것은 소유권제도가 해당 시기 국가주권과 함께 사회제도의 성격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소유권은 철두철미 계급적성격을 띠며 소유권제도의 성격과 내용은 해당 사회의 생산관계의 성격과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소유권은 소유의 법률적존재형식으로서 해당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그것은 언제나 해당 사회의 사회계급적성격을 반영하게 된다.

로마법에 규제된 소유권제도와 그 반동성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자본주의민법의 반동 적본질과 성격을 근원적으로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오늘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은 로마국가에서 통용되던 법술어와 개념, 법원칙과 제도들에 기초하여 부르죠아지의 사적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하였다. 특히 로마의 소유권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상품화폐관계를 자세히 규제한것으로 하여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들의 사적소유를 보호하고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수립하는데 크게 리용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법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법제정의 력사적원천이며 기초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로마의 소유권제도는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노예주계급의 소유를 적극 보호하고 실현 시켜줌으로써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보장하고 착취계급의 기생충적생활을 보장 하는데 복무한 반동적인 법률제도였다.

로마의 소유권제도의 반동적성격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의 기본생산자대중인 노예들을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있다.

노예소유자사회에서 노예대중은 사회의 기본생산자대중의 하나였으며 사회발전의 주되는 담당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노예소유자계급의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여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으 면 안되였다.

로마노예소유자사회의 생산관계의 기초에는 생산수단과 함께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노예대중에 대한 노예소유자들의 완전한 소유가 놓여있었다.

다른 노예소유자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노예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그들의 생존은 노예주들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노예는 아무러한 《인격적권리》도 없었으며 그 소유자에 의하여 매매되고 처분되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노예는 《활동하는 도구》, 《말하는 도구》라는데서만 다른 물건이나 생산도구, 동물과 구별되었을 따름이였다.

노예주는 노예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졌다. 노예주가 버린 노예는 무주물로서 먼저 차지하는자의 소유물로 되였다. 노예의 인신에 대한 상전의 처분권은 법률상 아무런 제한 도 받지 않았다. 노예주는 노예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으며 지어 그를 죽일수도 있었다. 물건으로서의 노예는 그 어떤 재산도 가질수 없었으며 노예의 의사와 행위는 아무런 법적의의도 가지지 못하였다.

물론 그후 노예주들이 저들의 리익을 위하여 노예는 자기 주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들이거나 대리를 수행하는것과 같은 일정한 정도의 법률행위를 수행할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노예의 경제적리익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었으며 생산도구로서의 역할로밖에 되지 않았다.

로마에서 노예는 물건처럼 자유롭게 매매되였다. 로마에서는 법률상으로 노예주가 노예를 마음대로 팔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수도 있었다.

노예주들은 노예가 늙었거나 병들어 로동력이 어느 정도 상실하기만 하면 불필요한 생산도구를 처리하듯이 팔아버렸다.

이와 같이 로마노예소유자국가는 노예주들의 노예에 대한 완전소유를 법적으로 엄격 히 보호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노예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보장하였다.

로마의 소유권제도의 반동적성격은 다음으로 사회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유권취 득방식을 부단히 변화시켜 노예주들의 사적소유를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는데 있다.

로마에서 소유권제도의 변화과정은 곧 로마의 노예주계급의 사적소유를 보다 더 철저히 보장하고 보호하여주기 위한 법률제도의 개악과정이였다.

이것은 해당 시기마다 새롭게 규정된 소유권취득방식이 누구를 위한것이며 누구에게 유리한것인가 하는 분석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우선 로마법변천 제1기의 소유권취득방식에는 두가지 즉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방식과 《허위적인 소유권청구소송》을 통한 소유권취득방식이 있었다.

소유권취득방식들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취득방식으로서 반드시 로마시민에게만 한정 되여있었다. 이 시기의 소유권취득방식의 특징은 여러가지 복잡한 수속절차와 엄격히 규 정된 형식적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였다.

시민법에 기초한 소유권취득방식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행위에 의한 소유권취 득방식이 있었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방식은 판에 박은 절차를 강조하는 양도방식으로서 가장 오래고도 가장 전형적인 시민법상의 소유권취득방식이였다. 여기에서 특별한 형식을 통하여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의 소유자는 반드시 법이 정한 특수한 행위에 의거하여서만 자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수 있었다.

이 방식은 물건에 대한 로마법의 구분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로마에서는 물건을 둘러싼 사람들사이의 거래관계를 규정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관계의 대상으로 되는 물건을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였다. 다시말하여 로마법은 로마의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수준과 물건이 재산거래관계에서 가지는 특성 등에 따라 물건을 여러가지로 구분하였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을 민사거래를 할수 없는 물건과 민사거래를 할수 있는 물건으로 구분하였다.

민사거래를 할수 없는 물건에는 종교적으로 숭상하는 대상들, 국가소유물, 공동으로 리용하는 대상들(바다, 지구의 대기, 흐르는 물 등)이 속하였다.

민사거래를 할수 있는 물건에는 부동산(땅 및 그에 붙어있는 모든것)과 동산이 속하였으며 그것은 다시 특별한 형식을 통하여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과 특별한 형식을 통하지 않고도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으로 구분되였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도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무런 법적형식이 없이 넘겨주는것이 허락되였으나 특별한 형식을 통하여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원시사회의 잔재라고 볼수 있는 법이 정한 특별한 형식적행위가 요구되였다. 여기에는 로마의 경작지, 노예, 안장과 길마를 씌울수 있는 집짐승(즉 말, 노새, 황소 등) 등이 속하였다.

원시사회의 잔재인 형식적인 행위는 농촌경리에서 의의를 가지는 동산의 일부와 부 동산으로서의 토지가 계급사회에 들어와서도 다른 물건들보다 훨씬 오래동안 씨족 및 가 족의 소유물로 일정한 기간 계속 남아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마국가의 초시기 사적소유제도가 확립될 때는 아직 가족 및 씨족의 공동의 리익을 지키려는 씨족적잔재가 남아있었다. 그것이 형식적인 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망끼빠찌오식》취득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형식을 통하여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넘기려는 사람은 로마성인공민 5명과 계량원이 참가한 자리에서 동쪼각으로 저울을 두들기면서 정해진 말을 하여야 하였다. 그후 판매자는 동을 저울로 단 다음 동덩어리를 구매자에게 준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는것과 같다. 이러한 절차와 말은 단지 하나의 형식이였으며 대상의 넘겨주기와 가격의 지불은 별도로 진행되였다. 이것은 교환이 전체 씨족집단의 면전에서 진행되였던 로마씨족제도의 잔재를 말해주고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러한 의식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시민법에 기초한 소유권취득방식에는 《허위적인 소유권청구소송》을 통한 소유권취득 방식이 있었다.

이 방법은 허위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특별한 형식을 통하여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거짓소송을 제기하여 원래의 소유권자가 해 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이 그것을 넘겨받는것을 말한다.

시민법에 기초한 형식적인 소유권취득방식의 존재는 단순히 로마사회의 초시기 남아 있던 원시적인 사회관계의 잔재로만 볼수 없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로마의 착취계급의 소 유권보호와 경제거래에 유리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특별한 형식을 통하여 이전이 완성되는 물건들인 경우에 복잡한 허례허식적인 수속절차를 거치게 한 목적은 한편으로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사람들앞에서 진행하여 소유권을 획득한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확인시키자는데 있었으며 다른한편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한자에 대하여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미리 못박아둠으로써 소유권자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사소한 침해도 나타나지않게 하려는데 있었다. 이것은 국가형성초기 경제가 그닥 발전하지 못하였고 자연경제가지배적이였던 당시의 조건과 노예주계급의 경제적요구실현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였다.

당시에는 경제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이 손쉽게 진행되도록 하는것보다 드물게 진행되는 소유권이전이나 취득의 합법성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시키는것을 통해 소유권자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이 더 전면에 나섰다. 다시말하여 착취계급의 리익을 더 잘 보호하자면 원시사회로부터 계급사회에로 갓 넘어와 원시적인 사회경제관계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던 조건에서 원시사회에서 통용되던 방식을 리용하는것이 착취계급에게 유리하였다. 이렇게 해야 원시적인 사회관계들이 다소 남아있던 로마국가의 초시기 초래될수 있는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시키고 그들을 저들의 요구와 리익에 복종시킬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또한 로마법변천 제2기에 로마법이 시민법과 만민법체계를 이루면서 만민법에 기초 한 소유권취득방식도 중요한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로 인정되였다.

이 시기 소유권취득방식의 특징은 제1기의 소유권취득방식과 같은 복잡한 형식적절 차에서 벗어나 보다 단순한 형식으로 이루어진것이다.

형식을 중시하던 시민법에 기초한 소유권취득방식은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착취계급의 리익을 보호하는데서 점차 불합리한것으로 인정되게 되였으며 로마사회에 남 아있던 원시적잔재들의 의의가 없어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 이딸리아반도의 좁 은 레두리내에서 경제 및 상업활동에 종사하던 노예주들은 로마의 령역이 대폭 확장됨에 따라 넓은 정복지역들은 물론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및 나라들과의 거래에 적극 나 섰다. 지난 시기의 복잡한 형식적절차들이 노예사회의 경제거래관계를 확대하려는 착취계 급의 리해관계에 저촉되게 되자 통치계급은 점차 그것을 없애고 만민법의 합리적인 규범 들을 받아들여 형식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 보다 간편한 소유권취득방식들을 법적으로 규 정하였다.

만민법에 기초한 소유권취득방식은 로마에 의하여 정복된 속주(로마의 식민지)들에서 피정복민들사이에 리용되였다. 속주들에서 소유권취득은 아무런 형식적절차도 거치지 않 았으며 공개적으로도 진행되지 않았다. 단지 관습에 기초하여 물건을 선점이나 자연양도, 시효에 의한 취득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이전시켰다. 이러한것들은 종전의 시민 법에 기초한 까다롭고 복잡한 소유권취득방식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신속한 방식이였다.

제정시기에 들어와 정복지역들에서 피정복민들의 투쟁과 자기의 옛 지위를 빼앗긴 피정복지역의 착취자들의 반항도 점차 강화되였다. 로마인들과 피정복민들과의 대립과 모 순, 투쟁이 심화되자 로마통치배들은 하는수없이 일련의 피정복민들에게 로마시민권을 부 여함으로써 첨예한 사회적모순과 계급적대립을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로마에서는 시민법과 만민법의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 두개의 법들이 융합 되게 되였다. 이 융합은 시민법이 만민법의 합리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로마법 이 이딸리아령토의 노예주들은 물론 로마에 의하여 정복된 전체 지중해지역의 착취계급 의 리익을 통일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으로 되게 하였다.

또한 로마법변천 제3기에 들어서면서 소유권제도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시기 소유권취득방식의 특징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원시적취득을 중요한 취득방식으로 인정한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법전》은 소유권취득에서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원시적취득을 원시적 취득과 파생적취득으로 구분하고 원시적취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로마법이 원시적취득방식을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로 규정한것은 당시 로마의 기본 생산수단이였던 토지와 광산이나 채석장, 수공업장들을 경영하던 사적소유자들의 재산증 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사적소유자들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거래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들간 호상 리익을 도모하여주기 위한것이였다. 이것은 원시적취득형태들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리익을 우선시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 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로마법이 토지소유자들의 리익을 언제나 선차적인것으로 내세웠다 는것을 알수 있다.

로마법변천 제3기에 규정된 새로운 소유권취득방식들은 아무리한 생산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인민들과는 거의 아무리한 관계도 없는것이고 대부분이 로마의 생산수단과 많 은 재산을 소유하고있던 착취계급호상간의 경제거래에서 제기될수 있는 관계들의 조정과 관련한것이였다.

로마노예소유자국가에서 토지와 주요수공업장들은 착취계급이며 지배계급인 노예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조건에서 로마법이 규정한 다양한 소유권취득방식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사적소유권을 보호하고 경제거래관계의 편리와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치부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일뿐이였다.

로마의 소유권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노예주계급의 사적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침해하는 사소한 행위들에도 가혹한 법적제재를 가하였다는데 있다.

로마국가는 노예주계급에게 유리한 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공포하며 그 준수집행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였다.

로마에서 소유권에 대한 보호는 우선 피해자인 소유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반환청구권과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였다.

이러한 소유권보호방식은 겉으로는 모든 로마주민들의 리익을 보호할수 있는 방식인 듯 한 감을 주지만 사실상 부유한 노예주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이였다. 그것은 당시 로마에서의 소송은 탄핵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된것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증거수집과 증인호출 등 소송과 관련한 과중한 부담을 걸머져야 하였기때문이였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노예주들만이 감당할수 있는것이였다. 인 민들은 아무리 재산상손해를 보아도 소송과정에 제기되는 재정적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감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소송에는 형식주의적인 요소가 많았기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송전과정에 하여야 할 말과 동작을 모두 알고있어야 하였고 그대로 답습해야 하였다. 만일 어느

한 요소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소송에서 패하게 되였다. 이것은 착취계급의 리익의 옹호자들인 재판관들이 소송상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리유로 인민들은 소송에서 패하게 하고 노예주들이 이기게 할수 있는 합법적공간이였다.

로마에서 소유권에 대한 보호는 또한 가혹한 형벌적위협과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도 실현되였다.

로마에서는 노예가 도적질을 하면 매를 치고 벼랑에서 떨구어죽였으며 자유민에 대하여서는 매를 치고 피해자의 처분에 맡겼다.

범죄현장에서 잡힌 도적이 무기를 들고 대항하였다면 재판없이 즉석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에게 부여되였다.

소유권침해에 대한 이처럼 가혹한 형사적제재는 로마법의 계급적성격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로마법은 노예주계급의 사적소유를 늘이고 인민들을 착취하는데 편리한 온갖 법적조건과 수단을 마련하여주었으며 민사적 및 형사적제재방법을 총동원하여 노예주계급의 사적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였다.

로마의 소유권제도는 근대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나라들과 일련의 지역들에서 민법 전의 편찬과 그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로마법이나 자본주의법은 그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다같이 착취사회의 법이며 생산수 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착취계급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로마법은 부르죠아지들을 현혹시켰다.

근대에 들어와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사적소유를 철저히 보호하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보다 더 강화할 목적밑에 소유권제도를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 공고화하 려고 하였다.

바로 로마법은 사적소유자들의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제한것으로 하여 부르죠아지들의 경제적요구를 실현하는데서 거의나 수정이 필요없는 《본보기》로 되였다. 이런 면에서 중세에 판을 치던 게르만법이나 교회법은 로마법에 비하면 대비도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르죠아지들은 로마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본주의물권제도확립의 기초로 삼게 되였던것이다.

절대성과 추상성을 가지였던 로마의 소유권개념과 소유권의 취득 등은 자본주의나라 들의 민법전들에 적지 않게 반영되였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유명한 《프랑스민법전》(1804년)은 소유권의 개념정의에서 《절대적소유권》에로 기울어졌으며 동시에 그것을 더 구체화하여 소유권이 포함하고있는 내용을 명확히 렬거하였다. 여기서 《절대적인 소유권》 혹은 《무제한한소유권》은 로마의 소유권과 다를바 없으며 다만 그 구체성 즉 권능의 렬거에서 차이가 있을뿐이다.

《프랑스민법전》에서 강조한 권리의 절대성과 무제한성은 단지 개별적인 소유권자의 권리에만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적소유권과도 크게 관련되여있다. 이 법전에서는 공정 과 사전보상의 전제밑에서 개인재산을 공공의 리익을 위하여 강제로 이전시킬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로마법을 훨씬 초월한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시 련이은 국난과 대외전 쟁, 경제형편의 악화 등으로 국고가 텅 빈것으로 하여 재산원천을 긴급히 확대하여 국가 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려는 프랑스통치배들의 요구가 반영되여있었다.

《도이췰란드민법전》(1900년)의 소유권에 관한 정의의 제765조에는 《소유자는 법의 제한범위내에서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 제한다.》라고 되여있고 제903조에는 《법과 제3자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물 건의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며 다른 사람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라 고 규정되여있다. 여기에서 《처분》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의 처분권을 가리키는것이 아니 라 물건의 완전한 지배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서의 절대성을 강조하자 는데 있었다.

로마법은 소유권의 취득측면에서도 자본주의법변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도이췰란드민법전》의 소유권취득방식에서는 로마의 19가지 소유권취득방식가운데서 13가지를 받아들였다. 즉 취득시효, 증여, 선점, 매장물취득, 리자증식, 혼합, 첨부, 양도, 상속, 버린 물건의 취득, 공유 등을 규제하였다.

《도이췰란드민법전》은 선점원칙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동산에 국 한되였다. 실례로 제958조에서는 《주인이 없는 동산을 스스로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로마의 소유권취득의 중요한 방식의 하 나인 선점원칙을 그대로 구현한것이였다.

《프랑스민법전》에서는 로마법의 매장물을 통한 선점원칙을 받아들였다. 실례로 제 716조에는 《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토지에서 그것을 발견한 소유권자가 가지며 만일 다 른 당사자의 토지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와 절반씩 분배한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로마법의 매장물의 취득방식을 그대로 구현한것이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도 《프랑스민법전》의 해당 규정은 로마법과 거의 류사하였다. 동 산의 취득시효는 3년이고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원래소유자의 부동산소재지에서 주소를 가진 사람은 10년, 주소가 없는 사람은 20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로마법의 취득시효와 기본상 일치하다.

이처럼 로마의 소유권제도는 근대자본주의민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대륙법계》를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물권의 연구와 제도실현에 적지 않게 리용 되고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민법전들에는 로마법의 해당 규정이 그대로 반영되고있으며 로마법의 일반원리들은 자본주의법제정의 기본원칙으로 되고있다.

오늘 부르죠아지들은 로마법이 《대단히 발전》하였으며 《완성된 법》으로서 세계의 《법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요란하게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법의 반동적성 격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세계의 《법발전》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이란 본질에 있어서 로마법이 착취자국가의 법에 미친 반동적영향이다. 다시말하여 로마법이 세계의 《법발전》에 준 《영향》과 《공헌》 이란 착취계급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기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 적인 《영향》과 《공헌》이였다.

실마리어 로마법, 자본주의물권법